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효원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상위 법령 조항 번호를 잘못 인용하거나 띄어쓰기 등 용어가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오류 조항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의 표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법령 표현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용어, 띄어쓰기 등 정합성 확보
-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함 (안 제33조)
 - 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”을 “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”로 함 (안 제34조제1항제12호, 제40조제1항제10호)
 - “액화석유가스충전소”을 “액화석유가스 충전소”로 함 (안 제34조제1항제12호가목)
 - “관련시설”을 “관련 시설”로 함 (안 제34조제1항제13호, 15호, 18호, 안 제40조제1항제12~13호, 15호)
- 나. 관련 법령 인용 오류 수정
- “제3의2호”를 “제3호의2”로 함 (안 제51조제2항제2호)

- 다. 관련 법령의 약칭 표기 (안 제6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)
- 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법”으로 함 (안 제65조제2항제3호가목)
 - 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”을 “영”으로 함 (안 제65조제2항제3호마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”을 “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액화석유가스충전소”를 “액화석유가스 충전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5호 및 제18호 중 “관련시설”을 각각 “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생태계보호지구안”을 “생태계보호지구 안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6호 중 “의료시설중”을 “의료시설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”을 “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, 제13호 및 제15호 중 “관련시설”을 각각 “관련 시설”로 한다.

제51조제2항제2호 중 “제3의2호”를 “제3호의2”로 한다.

제6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

마.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“건축제한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제34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</u>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. <u>액화석유가스충전소</u>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. ~ 라. (생략)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<u>관련시설</u>. 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33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----- <u>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</u> ----- 가. <u>액화석유가스 충전소</u> --- ----- ----- 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 ----- <u>관련 시설</u>. -- ----- -----.</p>

가.·나. (생 략)

14. (생 략)
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

16.·17. (생 략)

1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

② ~ ⑤ (생 략)

제39조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·② (생 략)

③ 영 제7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,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40조(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)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~ 5. (생 략)
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

7. ~ 9. (생 략)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
----- 관련 시설

16.·17. (현행과 같음)

18. -----
----- 관련 시설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생태계보호지구 안-----

-----.

제40조(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- 의료시설 중 -----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
시설(주유소는 제외한다)

11. (생략)
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
시설 중 축사·가축시설·도
축장·도계장
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

14. (생략)
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

②·③ (생략)

제51조(용적률의 완화) ① (생략)

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
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
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
서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
령」 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
임대주택, 제3호의 행복주택,
제3의2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
이나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

10. -----
----- 위험물 저장 및 처리
시설-----

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
----- 관련
시설 -----

13. -----
----- 관련 시설

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
----- 관련 시설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용적률의 완화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제3호의2-----

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 2)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(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정함)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,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

3. ~ 9. (생략)

제65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

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

나. ~ 라. (생략)

마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

3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65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가.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공동위원회

원회

바. (생략)

4. (생략)

바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일부 조문에서 상위 법령 조항 번호를 잘못 인용하거나 띄어쓰기 등 용어가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위 법령 인용 오류 조항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의 표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